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3일, 이양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9.)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양수 의원)

현행법은 갑문, 운하 등 항만에서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안전한 조작을 위하여 시설장비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비가 있더라도 현행법은 시설장비의 사용중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 관리자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항만에서의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용 연수가 오래되어 노후화된 시설장비나 대형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장비를 일시적으로 사용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하여 시설장비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원활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가. 시설장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제도 도입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이하 “정밀안전진단등”) 제도를 도입하여, 노후화된 대형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등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잔존수명 및 안전등급 평가 등이 포함된 강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항만 내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시설장비 일시적 사용중지 및 재사용 근거 마련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가 시설장비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재사용 시에는 관리청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장비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하더라도 주간점검, 분기점검 등 시설장비에 대한 자체검사는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선교)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